

미국 의료기관에 있어서의 법률자문인의 역할 ROLE OF LEGAL COUNSEL IN THE HEALTH CARE SYSTEM OF THE U.S.A.

NICHOLAS A. SPINELLA

General Counsel

St. Mary's Hospital

Richmond, Virginia U.S.A.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병원진료 체계를 관찰하고 여러분과 함께 미합중국 변호사가 미국의 병원 진료 체계를 수행하고 있는 특별한 역할에 관해 토론회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은 여러분들께서 체험했던 5,000년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누지 못했으니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은 병원 진료의 경험적 측면에서는 매우 연륜이 짧은 나라입니다. 더구나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하며 그러기 위해 정보와 아이디어도 교환해야 합니다. 문화는 상대국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세상교회안에 있는 가톨릭 교인으로서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도직을 함께 이행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병원의 진료활동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의 일부입니다. 우리 모두의 임무는 미합중국 가톨릭 병원협회의 포교성명서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포교성명서에 의하면 가톨릭 병원협회는 교회가 환자를 성실히 치료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 하도록 구성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그 개적이거나 단체적인 영적 착상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한 그의 복음 메서지입니다.

니다.

가톨릭병원연맹의 임무는 성신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현존하심과 병자 치료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공통된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병원만이나 한 종교적 모임이나 한 교구나 한 협의회나 혹은 어떤 한 국가만이 홀로 우리의 포교 의무를 완성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어떤 어려움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 우리가 아끼는 병원 진료 체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자 다른 이의 경험들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가톨릭병원 진료활동은 80년대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리 모두는 동감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도전들은 오로지 평신도와 함께 이 사도직을 나눔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톨릭 기구나 국가나 세상 어디에서나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기 위해 노력함에 있어서 평신도는 동반자이며 같은 지도자라고 가르치며 수도자와 평신도 간의 협력이 가톨릭 병원진료 사도적 임무수행의 도구가 되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나는 미국에 있어서 그 협력의 핵심인가

톨릭 병원 내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병원 진료 체계에 있어서 법률 자문인의 역할에 대해 여러분과 논의하고자 합니다.

Richmond에 있는 성모 병원의 이사진의 구성원으로 16년간 종사해 온 경험을 통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병원 변호사는 미 합중국 가톨릭 병원 사도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조인으로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수행해야만 함을 저는 강렬히 느낍니다.

현대 미국 사회에 있는 병원은 세상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과학적인 진로로써 마련된 발전된 가장 놀랄만한 표본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병원이 한때 앓거나 다친 사람을 단순히 수용하기 위한(보통은 죽어 버렸지만)진물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의 맨 첫 병원은 버지니아주 Jamestown에서 강을 따라 50마일쯤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에 맨 처음 정착한 영국인의 이름인 버지니아주 내고향 마을 헨리코플리스에 1612년에 세워졌습니다. 이 병원은 50병상이었는데 1622년 맨 첫 미국인이었던 인디안들에 의해 불타 버렸다고 합니다.

그후 1620년부터 1624년말까지 버지니아주 Jamestown에 있는 런던회사가 일찌기 유럽 사회에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길손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까지도 편의를 제공했던 호텔 병원식 영빈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런던 회사가 망하자 미 식민지에 있었던 환자들을 자기네 집에서 혹은 의사들 집에서 앓는자나 다친이를 돌본 경험이 있는 일반 시민의 사가에서 돌봐졌습니다.

첫 종합병원은 알려진바와 같이 Benjamin Franklin에 의해서 필라델피아에 설립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운영중에 있는 그 펜실베이니아 종합병원은 1751년에 진료할 수 있는 인가를 받았었습니다.

1800년 이전에 미국에는 단 12개의 병원만이 있었습니다.

그들 병원마저도 더러웠고 혼잡하였으며 중요한 공중 위생 문제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질병은 혼잡한 병원을 통해 번졌으며 의과

계 환자들은 자주 감염이나 속크를 받아 죽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죽을 수 밖에 없었던 환자들의 수는 너무 많았으므로 일반적으로 병원은 무덤으로 가는 정거장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와서 전쟁발발은 병원조직이나 응급처치를 자극하여 중요 의약품개발은 부상자나 병자에 대한 병원치료의 개발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첫 가톨릭 병원이 1524년 멕시코 시티에 설립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립된 그 병원은 아직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미 합중국의 첫 가톨릭 병원은 1663년 병든 군인들을 치료하기 위해 Manhattan 섬에서 처음으로 진료가 개시 되었습니다.

자선병원으로서 첫 개인소유의 가톨릭 병원은 1720년 New Orleans에서 개업되었습니다.

자선 병원으로 계속 봉사를 해온 가장 오래된 국가의 가톨릭병원은 1847년에 핏츠버그에 있는 자애병원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633개의 가톨릭 병원에 169,928병상이 있습니다.

한때는 가톨릭 병원활동에서 수녀들이 낮 동안은 환자들을 돌보고 밤에는 청소와 경비업무를 수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과 제 2차 바티칸공의회이후에는 수녀들의 이탈이나 성소의 감소로 인한 인적자원의 부족때문에 병원활동의 유지를 위해 많은 부분에 수도원 수녀들이 대신 했었습니다. 병원은 궁색한 이런 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녀들은 봉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봉사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개입되었고 가난하고 늙은 사람들을 위한 정부의 복지 구상은 가톨릭병원이 이때까지 수녀들에 의해서 수행되었던 일들을 평신도들이 대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런 정부의 계획으로 인해 병원조직에서는 많은 법률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정부의 규정이나 통제가 따랐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법률의 확대는 미국 사회에 있는 병원들을 괴롭혔습니다.

과연 지난 15년간은 놀랄만했습니다. 따라서 병원 변호사의 역할은 점점 더 확대되었으며 더

우기 그 변호사의 일상적인 책임외에 병원조직의 기본구성원인 병원변호사는 정부의 많은 압력에 대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급증하는 많은 규정들은 병원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장이나 의료보험제도와 같이 병원에 대한 지원계획을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 예측되게 했을뿐만 아니라 병원행정을 대기업처럼 만들었고 따라서 이런 투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기업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경영기법이 따라야 함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각 병원장들은 환자들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더 새롭고 나은 방법을 개발하고 새로운 안목으로 병원 서비스를 확대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법적 환경이나 변호사와 병원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병원 변호사는 병원의 정식직원으로서 근무해야 할 것이고 개업의와 같은 일반적인 법률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보상조정문제는 연례적인 소송문제에서 시간적인 조정문제로 변합니다.

병원변호사에 의해서 조정되는 노동관계는 이사회, 병원장, 의료진과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병원변호사가 개입되는 병원문제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사회의 진료과장회의 진료팀의 규정 및 규칙이나 규정의 개정, 병원안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 병원에 대한 중대한 소송문제, 의사들의 병원에 대한 특권을 규정짓는 일, 병원의 기본인적 자원인 의사들을 위한 계약, 이권에 대한 분쟁의 검토, 병원 이사들의 재정문제 취급, 국가나 보험회사와 함께 제삼자에 대한 보상문제, 의료보험, 의료보장 제도와 Blue Cross 자본 확장이나 건설, 의무기록, 세금문제, 진료형태의 동의, 교육, 퇴직, 의료진의 특권의 제한이나 삭제, 병원의 위기나 손해 배상 문제, 근로 기준법, 의료실습규정, 간호실습규정, 의료 장비 도입 허가법등 동의서나 계약서 법률조서를 작성하는데 변호사가 되도록 빨리 관여하는 것은 이로운 일입니다. 변호사에 의한 조정은 중요하며 변호사에 의한 검토 및 작성 평가가 요구 됩니

다. 변호사는 간호원이나 의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현직 교육에도 관여되어야 하며 병원과 관계되는 모든 법률문제의 중재자 이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병원경영팀의 일부이어야 합니다.

미국에 있어서 법체계는 영국의 관습법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관습법은 법정판결에 의존하며 그 판결에 의하여 치료 의사나 병원측의 소홀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받은 환자는 그 상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나 병원은 그런 경우에 금전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보험에 들 것이고 병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환자에게 승소판결이 났을 때 그 보험회사는 환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법정 판결은 그 환자가 치료 받은 의사나 병원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어떤 위험을 받았는지에 따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 집니다. 그럴 위험이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법정에 가기전에 병원과 환자 사이에서 마무리 됩니다. 미국에 있어서 병원변호사는 보험회사의 변호사와 함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난관에 직면하여 있을때에 병원의 이름으로 조언합니다. 환자는 어떤 정해진 기간내에 즉 2년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 손해에 대한 고소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의사나 병원측은 피해 환자의 요구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와 의사와 병원 사이의 분쟁조정 체계는 지난 수년간 미국에서 잘 되어 왔습니다. 지난 10년이 넘도록 배상 요구 금액은 엄청나게 불었고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금액도 역시 증가했습니다. 그러므로 병원 비용지출의 원인도 증가했지요. 그렇게 증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적절히 치료하는 데 실패한 경우 배상 요구와 여러 형태의 분쟁의 경우 병원이나 의사에 대해 요구하는 것을 조정하는 법체계는 우리 미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에 있어서 병원변호사는 물론 병원을 위한 대변자이며 병원의 대표로서 이런 법적 절차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병원 변호사는 때때로 독립적인 3역을 하는듯 합니다. —이사진이며 의료진이며 행정진이기도 한— 같은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접근 하는듯 합니다. 병원변호사는 여러 경우에 서커스단에서 높은 줄을 타는 요술장이 같기도 합니다.

실패할 경우 자신(변호사)이나 병원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높은 공중 밧줄위에서 그 기묘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동시에 공중에서 공들을 갖고 놀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원변호사는 병원장의 친구이지 적은 될 수 없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많은 병원장들이나 대부분의 의사들은 병원변호사를 의심하고 다소 두려워하는 눈초리로 봅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자세는 병원변호사를 잘못 이용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병원변호사는 병원장이나 의료진이나 이사회와의 관계에서 변호사와 소송의뢰인의 관계로 병원에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병원 일반자문인으로서 변호사는 단순히 이사회회의에 참석하고 우연한 기회에 병원장과 협의하는 것만으로 효과적으로 병원을 대변 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의 병원법체계의 양상은 병원변호사가 개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서로 얽혀 있습니다.

병원 단체의 모든 3자 구성 요직과 변호사 사이에 계속적인 전문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병원이 의료법에 유능하고 급변하는 변화와 의료법의 발전에 자기 능력을 부응할 수 있는 일반자문인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반 자문인은 병원의 복잡한 법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특별 자문인에게 의뢰합니다.

병원장들은 병원변호사에게 병원변호사회와 같이 전문적인 사회에 가담하도록 하고 의료법 세미나에 참석하게 하며 그들의 능력을 지향하기 위해 의료법에 대한 출판물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병원장과 병원을 위한 일반 자문인이 좋은 신뢰관계를 확립한다면 전문지식을 통한 우정은 그들 사이에 존재할 것입니다.

훌륭한 관계는 한없이 좋은 이해와 관계를(의료진을 전체로서) 발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 의료진의 모두에 의해서 병원장이나 병원 변호사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희망을 걸기에는 너무 큰 무리이겠지만 의료진의 구성원과 진료 부장과 함께 목표를 향한 많은 의미있는 발전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것이 될때 많은 도움이 병원이나 이사회와 맞서는 것보다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고 병원단체에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병원변호사는 위기에 처했을 때만 호출되는 사람이 아니고 병원에 대한 소송장을 다룰 때 법정으로부터 병원을 희망적으로 보호하는 지도와 조언을 주는 또 병원원에서는 전문지식가인 조력자 입니다. 병원변호사는 의사들이 오래도록 이사진으로 봉사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이사진의 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문인으로서 그들은 이사진의 역할에서부터 변호사로서(혹은 의사로서) 전문적 역할로 분리되며 유용한 개인적인 전문지식을 이사진에게 제공하며 이사진의 회의의 결정에 질적으로 많은 공헌을 합니다. 병원변호사는 법적인 면에서 의료전문인입니다. 그는 병원의 끊임없는 행정업무의 지속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과 보호로 많은 공헌을 합니다. 병원이 변호사의 능력을 적당히 이용하지 않는다면 많은 도움을 잃어 버릴 것입니다.

병원경영에 있어서 병원변호사의 역할을 활용함으로써 해서 병원이 예방책을 활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병원변호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에 대해 법적 소송제기를 야기하는 행동을 피하기 위해 예방책의 중요성을 역시 이해 해야만 합니다.

가톨릭병원에 있어서 병원변호사는 가톨릭병원협회 사도직에 특수한 면을 제공합니다. 가톨릭병원변호사는 병원의 종교적 도덕적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우리의 사회 구조상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불임이나

유산, 안락사, 법정판결로 죽어가는 환자의 치료나 가톨릭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관례를 개선 할려는 국가정책등의 영역에서 종교적 윤리적 이념을 고수하려는 가톨릭병원조직에 많은 압력의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우리는 Joseph L. Bernadin 주교님께서 말씀하신 주인이든, 후원자이든 병원의 보편 타당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합니다. 성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병원을 보편적으로 만들지 않고 성인의 호칭을 입는것만이 개인을 보편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가톨릭병원의 합치된 태도가 예수님의 세상 교회에 확인되고 이해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치료 의무와 일치되지 않는다면 병원은 타당성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병원, 사제들, 수녀들, 병원장들, 의사들, 간호원들, 청소부, 이사진 병원 변호사로 구성된 완전한 공동사회는 예수님의 의료의무에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가톨릭병원 자문인의 특별한 역할은 공동사회속에 있는 병원의 보편성을 지키고 윤곽을 그리는 것입니다. 가톨릭병원에 근무하는 가톨릭 변호사 역할의 중요성은 똑 같은 도덕율에 위배되지 않는 다른 의료 활동과 나란히 가톨릭병원 활동이 존재하는 세상 사회에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어 질수는 없습니다. 가톨릭병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하심과 그의 교회를 계속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톨릭병원활동으로 계속 존재할 정당성을 잃어 버립니다. 가톨릭병원변호인은 시장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자이어야 하며 그가 대표하는 가톨릭병원활동에 있어서 그 지역 주교님의 지도하에 교회의 도덕적 가르침의 법적 수호자이어야 합니다. 1세기 훨씬 이전에(Gerard Manley Hopkins) "Heaven Haven"이란 제목으로 시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오늘날의 병원변호사와 병원장에게 부탁한 것을 찾아 낼수 있습니다.

가고파라

봄이 사라지지 않는 곳으로.
 폭풍이 없고 벌나비가 마음껏
 뛰어 놀수 있는 들판으로.
 백합 향기 훑날리며

폭풍이 없고
 성난 파도는 사라지고
 녹음이 우거진
 그곳이 어디냐고……

그 시는 단순한 열망과 단순함에 대한 동경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한 지난날의 결백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 바람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얼마간의 양식, 피할 수 있는 은신처, 작은 아름다움과 두려운 폭풍이 없는 곳— 그러나 그 몇 해 동안 폭풍은 닳쳤고 그것을 피할 시설은 없었습니다. 그 폭풍은 지도자나 병원장이나 가톨릭병원의 병원변호사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힘의 형태로 닳쳤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완전히 독립적인 병원 경영을 기뻐했습니다. 짧은 몇 해의 공백을 주는 사이 이 모든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화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회나 연방 각료회의 제 3의 Payors. 인플레이션이나 법원은 가톨릭병원의 임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병원 경영은 미래 발상적인 활동이어야 합니다. —과거는 가고 현재는 벌써 결정 되었습니다. —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상은 폭풍우가 올 듯한 곳은 날씨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요소가 —경비, 병원 진료에 대한 정부의 개입, 유기적 문제— 시간이 갈수록 더 증가할 것이며 한때 이사회들의 고유 책임이던 결정은 정부·주·가격이나 예산 평가그룹 제 3의 보험회사나 병원의 견해에 점점 예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폭풍이 없겠는지 물을 것이며 폭풍이 사라지기를 기대할 것이나 폭풍과 닢의 현실은 엄연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의 우리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속죄하는 데 책임을 져야합니다. 가톨릭병원 안에서 그 보상은 그리스도의 치유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키에 손을 잡고 서로 협력하여 조종하여야 하며 희망을 가지고 미래의 폭풍을 헤치고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여 오늘 이 세상의 복잡하고 혼란한 때 성지 순례자와 같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임무를 소중히 이행할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적당히 중재되는 병원번호는 미래 병원의 성공적 경영에 지대한 공헌을 줄 수 있으며 가톨릭병원에 있어서 병원번호

사는 세상 교회가 속죄 임무를 수행하는데 크리스찬 치료인의 완전한 공동체와 더불어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